

공정거래법 개정안(2012년 2월 27일 국회 의결)의 주요 내용

국회는 2012년 2월 27일 물리력을 행사하는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처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조사개시의 경우 5년 연장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기업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물리력을 행사하는 조사방해에 대해 형벌 부과(제66조 제11호)

현행	조사방해에 대해 과태료(사업자 최대 2억원, 임직원 최고 5천만원)
개정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형벌(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들의 건물 또는 사무실 진입이 저지·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사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부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로 하였는바, 기업 담당자들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대응과 관련하여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타 유형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처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조사개시의 경우 5년 연장(제49조)

현행	조사 개시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나 과징금 처분 불가
개정	①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처분 불가 ②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처분 불가

종전에는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조사를 개시하게 되면 5년이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위반행위의 조사 및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회사분할시 과징금 연대납부 의무 규정(제55조의 3)

현행	회사분할의 경우 과징금 납부책임 승계규정 없음
개정	과징금 부과처분 전에 범위반 회사가 분할된 경우 “분할되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중 어느 하나에 과징금 부과

종전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 위반사업자가 합병된 경우에 대해서 납부책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존속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분할 후 설립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바, 회사분할시 이러한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공동행위 부분 과징금 상향(제28조)

현행	동일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사업자간 행위에 대해서는 10%, 사업자단체를 통한 행위에 대해서는 5%라는 상이한 과징금 상한 적용
개정	사업자단체를 통한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상한을 10%로 상향

종전에는 사업자단체를 통한 공동행위의 경우 참가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이 관련매출액의 5%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적용되는 10%와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를 통한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10%라는 상한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철 변호사 (전화번호: 02 316 4629, 이메일: ycyim@shinkim.com)

박주영 미국변호사 (전화번호: 02 316 4692, 이메일: jyoungpark@shinkim.com)

조창영 변호사 (전화번호: 02 316 4631, 이메일: cycho@shinkim.com)

백대용 변호사 (전화번호: 02 316 4630, 이메일: dybaek@shinkim.com)

Seoul Office Tel : + 82 2 316 4114 Beijing Office Tel : + 86 10 8447 5343 Shanghai Office Tel : + 86 21 6235 0411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